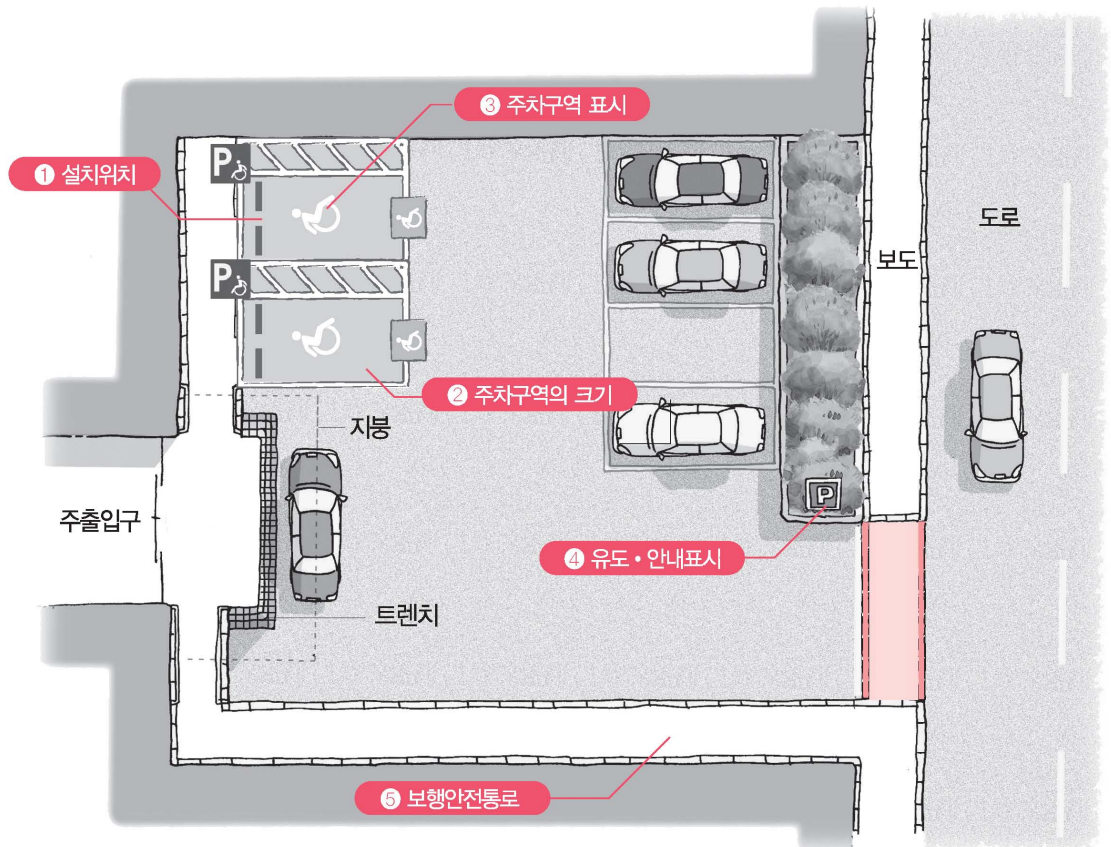


2.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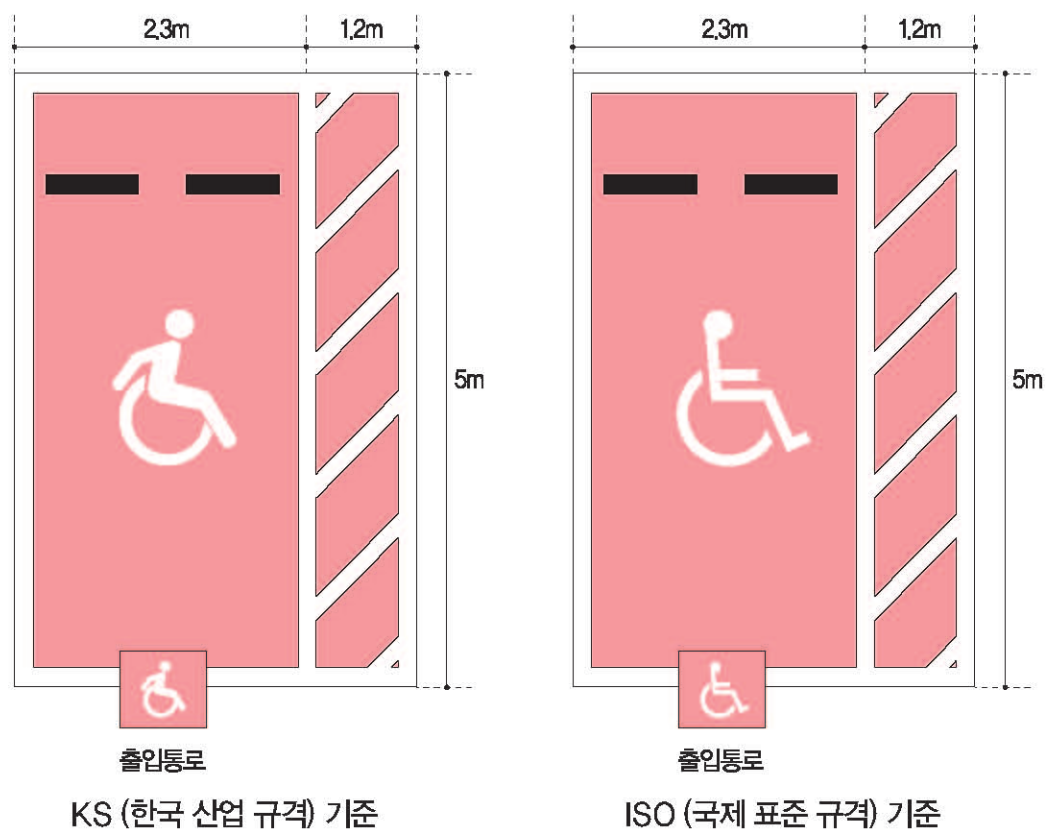
■ 설치원칙

보행장애인에게 휠체어와 승용차는 신체의 일부이며 잃어버린 신체기능을 대신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이 둘이 없이는 이동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불가능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필수시설이고 유일하게 비장애인과 겸용이 안되는 편의시설이다.

■ 설치요점

- 승강기 등이 있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가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는 위치여야 한다.
- 평탄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.
-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표시를 바닥면과 전면 등에 식별하기 쉽도록 설치한다.
- 지정 주차장인 경우에는 입식표지판과 차량에 지정 주차인의 차량 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가능하면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장애인 전용 주차구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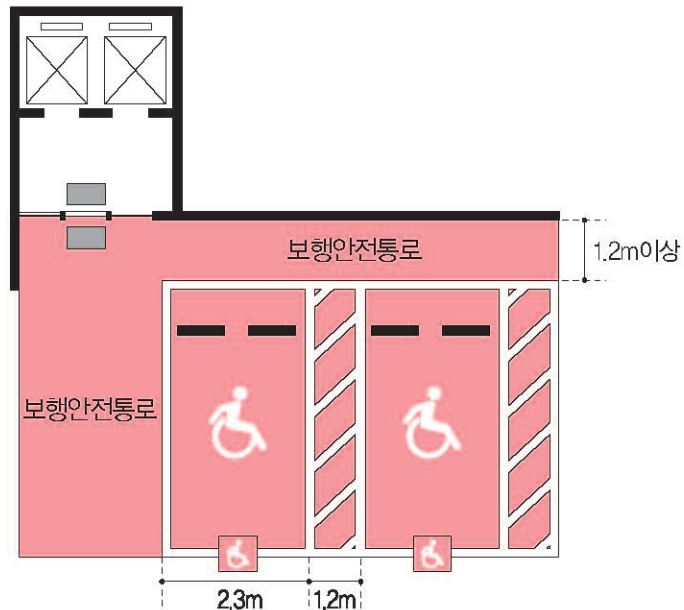
- 비 고 -

- 1. 규격 가. 표지판 : 70cm X 60cm
 나. 휠체어 그림 부분 : 가로 56cm X 세로 42cm
- 2. 색채 표지의 색은 청색(바탕)과 백색(휠체어 그림)을 사용한다.
- 3.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.
- 4. 설치위치 위 그림과 같이 출입통로 방향(하단)의 주차구획선에 1/2정도에 걸쳐서 표기한다.

※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」의 경우
주차장의 바닥면 안내표시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 3]의
작도법을 참고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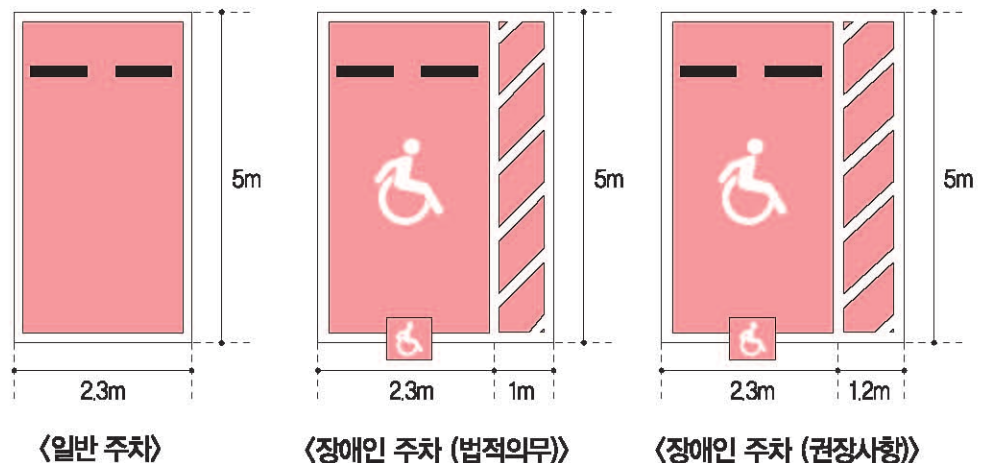
1) 설치위치

- 장애인용 승강설비가 있는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.
- 휠체어 사용자 등이 승차 전과 후에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출입구에 도달 가능한 보행안전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.
-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여야 한다.
- 이용자가 눈,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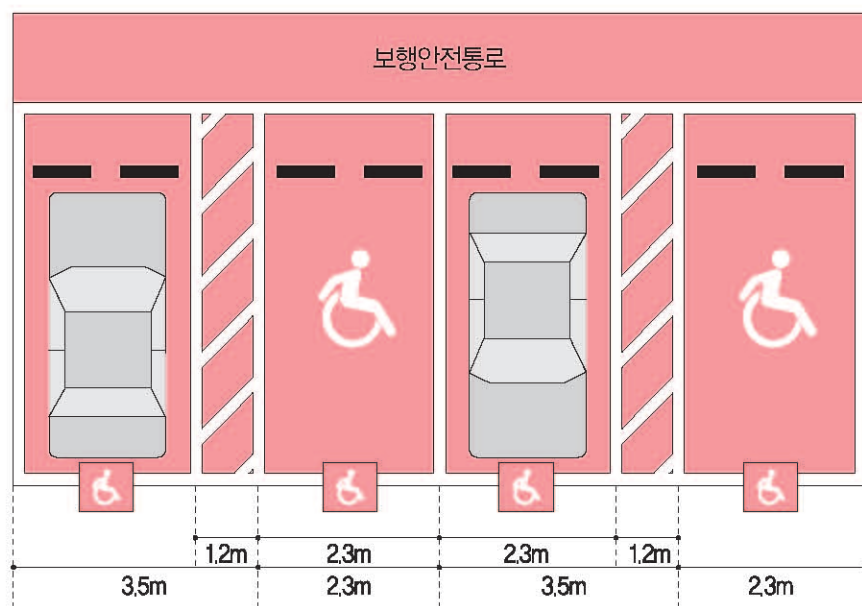
2) 주차구역의 크기

- 주차구역의 폭은 3.5m 이상(주차폭 2.3m + 휠체어 활동공간 1.2m)이 되어야 하며 최소한 3.3m 이상이어야 한다.
- 유효폭 1.5m 이상의 보도에 평행주차하는 경우에는 길이 6m, 폭 2m로 할 수 있으며, 이 때 접근로와 주차구역 경계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.
- 전면주차 혹은 후면주차에 따라 운전자의 승하차를 고려한 휠체어 활동공간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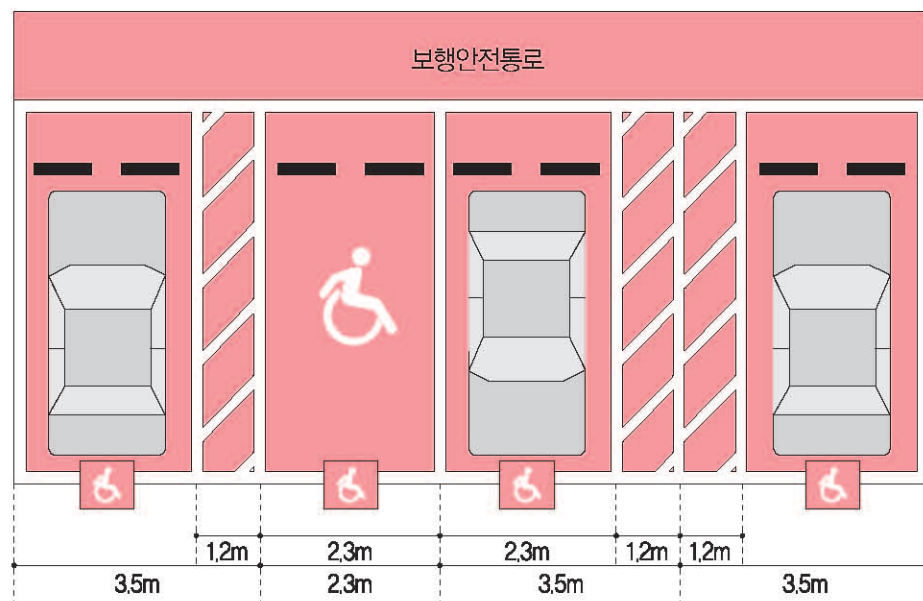


3) 주차구역 표시

- 주차구역의 바닥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주차구역 전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입식표지판을 세우되 3개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역을 표시한다.
- 보행안전통로 1.2m를 주차폭 2.3m의 좌우 주차구역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보행안전통로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 (단 휠체어 활동공간을 공유하는 경우,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면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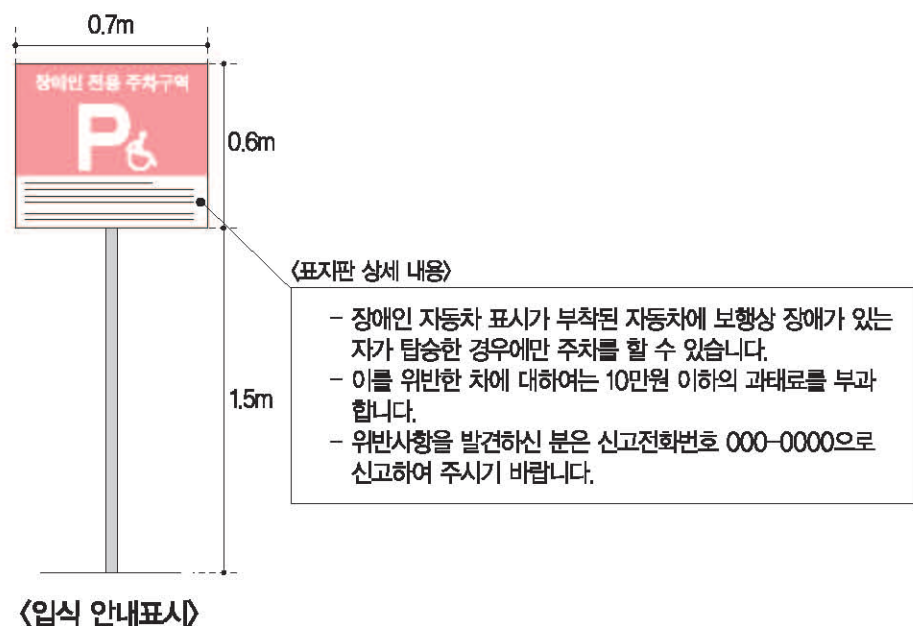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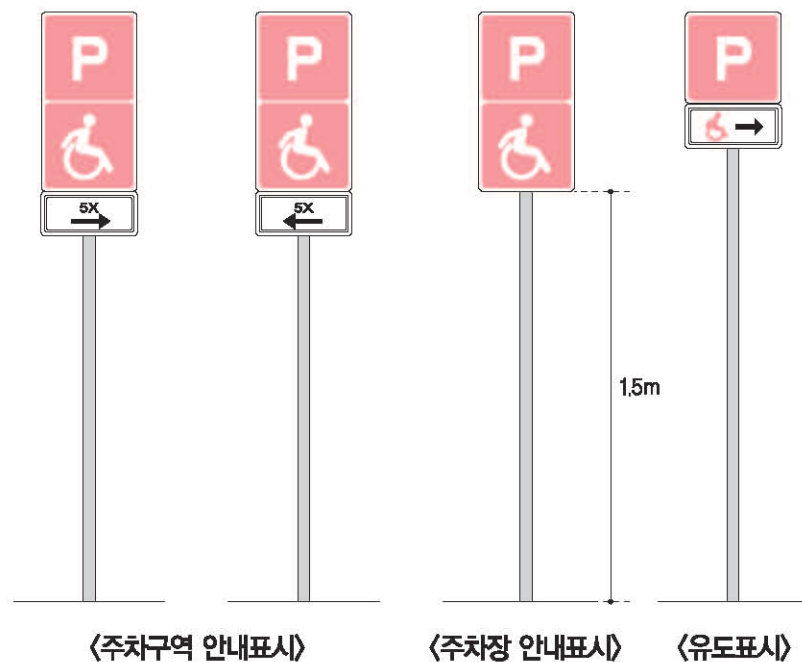
〈장애인 주차대수 2대 인정〉



〈장애인 주차대수 3대 인정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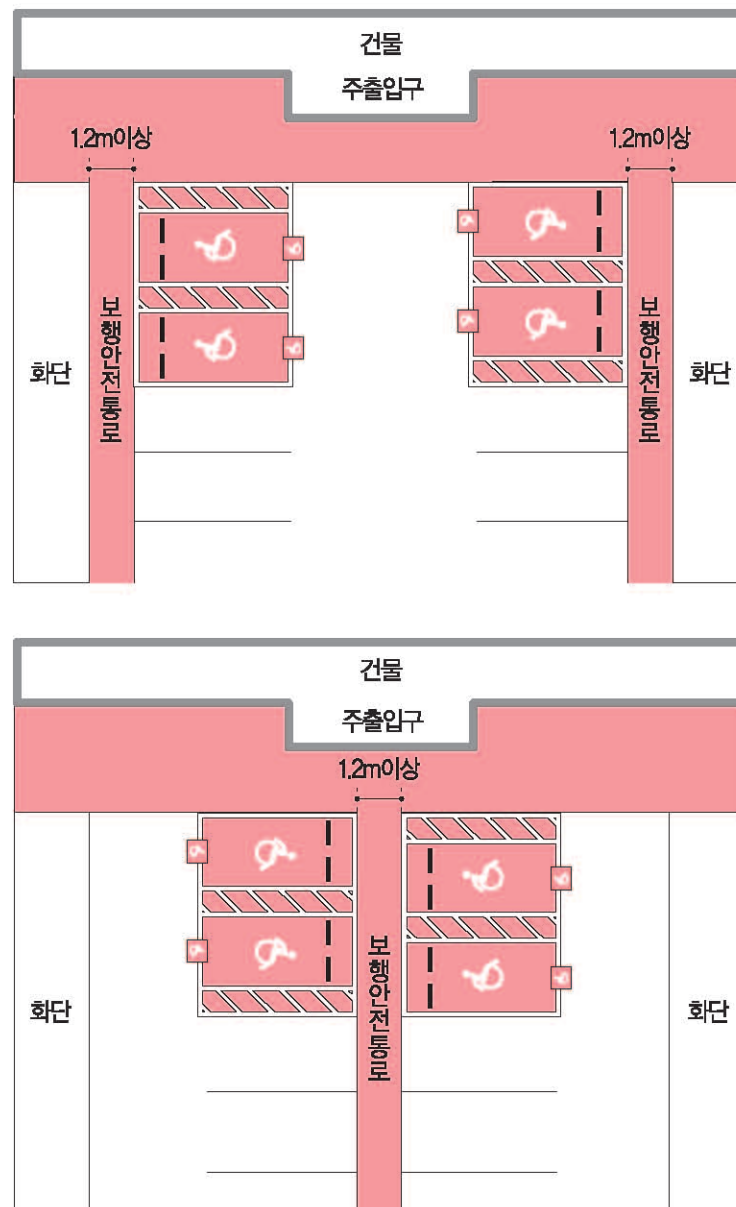
4) 유도·안내표시

-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안내표시를 하여야 하며, 주차장 입구에서 전용 주차구역까지는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유도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직장 또는 공동주택,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의 지정주차장일 경우에는 입식표지판과 해당 차량에 지정 주차인의 차량 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식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.7m, 세로 0.6m로 하고,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.5m로 한다.
-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안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며(예_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5면 연속 주차 안내표시) 각 면마다 벽 부착형 또는 입식의 형태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

5) 보행안전통로

-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주차장 내 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 통행표시가 된 보행안전통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-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없애고, 그 유효폭은 1.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

〈보행안전통로 설치위치〉